



DONG WON

ESG

협력사 ESG 행동규범

1

5

문서번호

DIS-ESG-S04

제 정

2022.10.01

개정번호

0

협력사 ESG 행동 규범

협력사 ESG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은 동원산업(주)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국내외 협력사(이하 “협력사”라 함)가 동원산업(주)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제정한 표준입니다. 협력사는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협력사에 조립, 부품 및 원자재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협력사에도 본 규범을 준수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1. 노동 및 인권

1.1 자발적 근로(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비자발적 죄수노동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부를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권, 근로허가증 등 정부가 발행한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하고, 협력사 또는 인력파견회사는 채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아동 노동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협력사는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의 연령을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갖추고, 각 국가 및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합니다. 만 18 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야간 근로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실습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3 과도한 연장근로 금지

주당 총 근로시간은 법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노동관계법규 규정 범위내에서 합법적 절차를 따름), 모든 연장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1.4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초과 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임금 지급 시 급여와 공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1.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괴롭힘, 욕설, 폭언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당 규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DONG WON	ESG	2 / 5	
		문서번호	DIS-ESG-S04
	협력사 ESG 행동규범	제 정	2022.10.01
		개정번호	0

공지해야 합니다.

1.6 차별 및 괴롭힘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채용, 급여, 인센티브 지급 및 승진, 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포함한 고용 관행에 있어 성별, 인종, 피부색, 나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 및 표현, 출신 민족·국가, 장애여부, 임신여부, 결혼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활동 또는 사회적 신분, 은퇴 군인, 기밀 유전 정보, 질병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나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7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

2.1 산업 안전

협력사는 안전보건 위험요인(화학물질, 전기 및 다른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추락위험 등)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프로세스 또는 유해물질 대체, 안전한 공정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와 안전작업절차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2.2 비상사태 대비

협력사는 잠재적 비상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대책과 대응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대책과 대응절차에는 비상상황 보고, 비상상황 전파 및 대피절차, 근로자교육 및 훈련이 있으며, 비상대응 계획에는 화재감지 및 진압 장비, 적치되어 있는 장애물 등 방해요소가 없는 대피로 및 비상구, 비상 연락망 및 복구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3 산업재해와 질병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사건·사고 보고 2) 부상과 질병사례의 유형분류 및 기록 3) 필요한 치료 제공 4) 근본 원인 분석 후 시정 및 예방 조치 수립(근로자 교육 포함) 5) 치료 후 사업장 복귀 지원

 DONG WON	ESG	3 / 5	
		문서번호	DIS-ESG-S04
	협력사 ESG 행동규범	제 정	2022.10.01
		개정번호	0

2.4 유해인자 노출 관리

협력사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을 통하여 그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된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되 불가할 경우 대체, 적절한 관리감독, 기술적·행정 적 조치 등을 통하여 노출을 기준치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요인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경우,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5 육체적 과중 업무 관리

협력사는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파악하고, 그로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절차를 개선하거나 순환근무/스트레칭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2.6 기계 설비 안전 유지

협력사는 모든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안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해당 장치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2.7 식당 및 기숙사 관리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시설을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구, 난방 및 환기시설, 합리적 수준의 출입 권한과 함께 적절한 개인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2.8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를 눈에 잘 띄는 곳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3. 환경

3.1 환경 관련 법규 준수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3.2 환경 인허가 취득

협력사는 법규를 준수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 유지하고 법규상 신고 의무를

 DONG WON	ESG	4	5
		문서번호	DIS-ESG-S04
	협력사 ESG 행동규범	제 정	2022.10.01
		개정번호	0

준수해야 합니다. 최신 법규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3.3 환경영향 최소화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현지 법규에 따라 유해물질,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폐수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관리 및 처리해야 하고, 자재 재활용,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 감축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4 친환경 경영 프로세스 구축

협력사는 친환경 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윤리

4.1 정도경영 준수와 부당이익 금지

협력사는 동원산업(주)의 정도경영 방침에 따라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모든 부패 행위를 정책적으로 금지합니다. 협력사는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며,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조사 및 제재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4.2 정보 공개

협력사는 관련 법규 및 업계 모범 기준에 따라, 노동, 안전보건, 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실대로 공개해야 하며, 관련 정보의 보관 및 폐기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4.3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동원산업(주) 뿐 아니라 동우너산업(주)의 고객사 및 하위 협력사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4.4 공정거래

협력사는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5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사는 비밀 및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채널과 내부 고발자의 신원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ONG WON	ESG	5 / 5	
		문서번호	DIS-ESG-S04
	협력사 ESG 행동규범	제 정	2022.10.01
		개정번호	0

4.6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근로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